

광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가합567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김수지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박강희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8. 2. 14. 체결된 채무변제계약 및 2018. 3. 2.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813,114,754원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채권 중 813,114,754원 부분에 관한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

원고는 2017. 12. 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5억 원을, 2018. 10. 29. 3억 원을 각 변제기 2018. 11.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의 공탁금회수청구권 발생

1) D는 2017. 2. 20. 광주지방법원에 C을 채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E에 대한 우선수익금 지급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7. 3. 2.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062)을 하였다.

2) C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9. 3. 19. C이 D를 위하여 담보로 9억 9,2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가처분취소 및 가처분신청기각 결정(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070)을 하였다.

3) C은 위 결정에 따라 2019. 4. 1.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241호로 9억 9,2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이후 D와의 관련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자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2019. 7. 16. 담보취소 결정(광주지방법원 2019카담650)을 하였다. 위 담보취소 결정에 따라 C은 대한민국에 대한 9억 9,200만 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

1) C은 2019. 4. 26. F에게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4. 29.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2019. 5. 1.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2) F은 2019. 7.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5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2019. 7. 2.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와 C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등

1) 피고는 2015. 4. 30.부터 2018. 2. 27.까지 C에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억 5,500만 원을 대여하였다(위 차용금을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하고, 각 차용금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대여내용		공정증서	
	대여일자	대여금(원)	작성일자	공정증서상 채무액(원)
1	2015. 4. 30.	100,000,000	2018. 3. 2.	355,000,000
2	2015. 6. 30.	50,000,000		
3	2015. 7. 31.	30,000,000		
4	2015. 12. 31.	50,000,000		
5	2017. 3. 20.	25,000,000		
6	2017. 9. 18.	100,000,000		
7	2017. 11. 30.	100,000,000	2018. 2. 14.	100,000,000
8	2018. 2. 27.	200,000,000	2018. 3. 2.	200,000,000

2) C과 피고는 ① 2018. 2. 14. G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8년 제305호로 표 순번 7의 대여금에 관하여 ‘C은 2017. 11. 30.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8. 2. 28.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H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② 2018. 3. 2. G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8년 제376호로 표 순번 1 내지 6의 대여금에 관하여 ‘C은 2018. 2. 21. 피고로부터 3억 5,500만 원을 변제기 2019. 6. 30., 이자 2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H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③ 2018. 3. 2. G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8년 제377호로 표 순번 8의 대여금에 관하여 ‘C은 2018. 2. 27.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8. 10. 30., 이자 2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H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①, ②, ③의 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각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9. 12. 1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898,723,644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9. 12. 20.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광주지방법원 2019타채14239,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9. 12. 20.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마. 관련 선행사건의 경과

1) 한편 피고는 제1, 2채권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이고, F은 수익자, 원고는 악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하며,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 F을 상대로는 ‘F과 C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2019. 4. 26.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967,714,35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F은 C에게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967,714,356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원고를 상대로는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5억 원에 관하여 2019. 7. 1.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5억 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5984).

2) F은 2020. 4. 9. 위 사건의 변론기일에 피고의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낙하였다.

3) 광주지방법원은 2020. 5. 1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20나22079), 광주고등법원은 2021. 8.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5984, 광주고등법원 2020나22079 사건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 선행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8. 2. 14. 및 2018. 3. 2.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피고와 C의 합의는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채무변제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 813,114,754원(=2017. 12. 11. 대여한 5억 원 및 이에 관하여 2017. 12. 12.부터 2020. 7. 21.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813,114,754원 부분에 관한 채권을 C에 다시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본안전향변

원고는 양 당사자와 소송목적물이 사실상 동일한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소송절차를 지연시켜 피고를 괴롭힐 의도에서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0. 7. 21. 별소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C은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라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소의 제기가 소권 남용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행사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그 소권의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에서의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로서 동일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7.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계속된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별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 소 제기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에서의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로서 동일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7.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선행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이 사건의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원고(이 사건의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 ②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원고(이 사건의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2018년 2월 내지 3월에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2019. 7. 16. 발생한 것인바, 원고(이 사건의 피고)와 C이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인해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이 사건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당사자와 쟁점이 동일한 이 사건 관련 선행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경, 판사 차유나, 판사 오정민

별지

목 록

C 주식회사가 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070호 가처분이의 사건의 담보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241호로 공탁한 992,000,000원의 출급청구권 중 피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광주지방법원 2019타채14239)을 받은 898,723,644원의 공탁금 출급청구채권. 끝.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별지를 누락하였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누락된 별지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401 결정(피고는 2021. 7. 26. 위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의 별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별지를 직권으로 추가하기로 한다.